知的所有權紛爭事例

# 新聞社와 出版社의 對決

## —比較廣告의 保護與否—

## <1978年 美聯邦플로리다南地法 判決>

1. 原　告 : TV가이드出版社(A)
2. 被　告 : 마이애미 헤랄드新聞社(B)
3. 事件槪要

B가 日曜版附錄으로서 TV案內書를 붙여 TV 프로그램과 TV에 관한 記事 또는 읽을거리를 登載한 一覽表로서 1977年 11月 13日부터 廣告캠페인을 시작하였다. 그 方法인 즉 自社新聞의 色彩廣告로써 또는 新聞自動販賣機를 活用하였고 TV 커머셜도 2種類를 만들었다. 한 커머셜이 30秒이며 金髮女人이 3마디의 곰을 맴돌게 한 TV가이드와 헤랄드의 附錄을 내어 TV가이드보다 헤랄드附錄쪽이 크다고 强調한 것이다. 광고의 結論은 헤랄드의 부록쪽이 人間에게 適切한 規格이란 內容이다.

이 커미셜에서는 台詞로서 TV가이드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으나 종전의 커머셜 즉 1977年 10月 19日부터 11月 7日까지의 커머셜에는 俳優한 사람의 손에 보다 짧게 表示되어 있던 이 3마리의 곰의 커머셜은 1977년 11월 17일에 放映되어 數週間 繼續되다가 그 후에는 中斷되었다.

커머셜의 TV가이드를 購入하는 場面에는 『이는 TV가이드, 貴下가 購入할 때 거저는 없읍니다. 이는 마이애미 헤랄드의 TV북입니다. 이를 당신이 살 때 多少 싸게 해 드립니다. 한 눈으로 어느 프로그램을 보느냐는 圖表로 알 수 있읍니다. 거저 한盞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TV로 볼 것이 없더라도 당신은 앉아서 附錄의 읽을거리를 볼 수가 있읍니다』라고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廣告의 TV가이드를 出刊하는 出版社에서는 新聞社에 대해서 比較廣告로써 賣出을 늘리기 위하여 原告出版物의 複寫를 使用하지 못하도록 中止命令을 請求하기에 이르렀다.

4. 判決要旨

플로리다南地法은 原告請求에 대하여

(1) 雜誌의 著作權에 그 表紙가 包含되는가

(2) 被告가 公正利用을 主張하였던가

(3) 憲法이 이 事件에서 著作權法의 適用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의 與否를 따진 다음

(1) 原告의 雜誌表紙中 被告에 의해 表示된 作品內容은 2가지의 다른 異論을 基礎로 하여 著作權이 있어야 한다. 컨더내스트出版社 對 보그스쿨 오브 패션모델社 事件의 判決에 따라 表紙는 雜誌內容과 關聯이 있다면 잡지의 저작권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다. VT가이드의 典型的인 표지는 텔레비스타와 잡지의 呼稱의 索引記事를 그린 것이다.

(2) 被告는 美著作權法107條가 원고의 作品을 商業的 批判인 比較廣告를 위하여 使用하는 것을 許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同 條項은 目的이 敎育的이고 商業的 目的이 아니어야 한다. 더우기 公正利用의 規定은 將來의 技術上의 變化에 直面하여 柔軟性을 남기고 法規上 適用되게끔 嚴密히 解釋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TV가이드가 TV를 즐기는 補助的 役割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比較廣告의 目的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結論을 내렸다.

5. 解　說

判決은 結局 이 行爲가 公正히 利用되지 않는다 하여 中止請求를 認定한다면 憲法을 해칠 念慮가 있다고 判示함으로써 原告主張을 否認한 것이다.